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곽동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20
----------	------

발의연월일 : 2025. 2.

발의의원 : 곽동환 의원,

신동윤 의원, 신달호 의원

1. 제안이유

인구 고령화 심화로 인한 치매 환자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바, 지역사회 기반 치매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치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나.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내용)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

고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치매검진비용,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 및 관리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5.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법 제19조 및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및 지원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그를 처리 및 관리 등을 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치매관리법(법률)」(2024.1.2. 일부개정, 2024.7.3.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 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치매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검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치매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6의3.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치매검진비용 및 의료비 지원(안 제5조),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안 제6조)에서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안 제4조에 따른 치매관리시행계획의 경우 소관부서에서 매년 수립하고 있음
- 안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정요인의 경우 「치매관리법」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2025년 치매안심센터 사업비

1. 2025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보조금
 - 734,700,000원(기금 80%, 시비 14%, 구군비 6%)
2. 치매치료관리비지원
 - 164,000,000원(시비 75%, 구군비 25%)

작성자

소속 및 직위

달성군의회 의원

성명(연락처)

곽동환 (☎ 2057)